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회생법원 추가 설치〉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53호)

2024.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회생법원 추가 설치	3
참고자료, 비용추계 결과	1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4. 6. 10.

3. 회 부 일 : 2024. 6.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대전·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법 개정으로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추가 설치됐지만, 여전히 광주와 대전, 대구는 회생법원이 없습니다.

최근 계속 이어지는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큼니다. 경기 침체로 개인과 기업의 회생·파산 신청은 2023년 기준으로 코로나19 유행기인 2021년보다 40% 이상 늘었습니다. 처리 건수 증가로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소요 기간도 늘었습니다.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 최소한 고등법원 소재지에 회생법원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광주와 대전, 대구에 각각 회생법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역 주민과 기업 등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별표 1 및 별표 10).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I. 검토의견

1. 회생법원 추가 설치

가. 개정안의 내용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와 같이 규정됨.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개정 2016. 12. 27.>

②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7.>

1.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2.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4
3. 각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5
4.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6
5. 각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7
6. 항소사건(抗訴事件) 또는 항고사건(抗告事件)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별표 8
7.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9
8.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0

- 개정안은 이 중 [별표 1]을 개정하여 대전회생법원(소재지: 대전광역시), 대구회생법원(소재지: 대구광역시) 및 광주회생법원(소재지: 광주광역시)을 새로이 설치하고, [별표 10]을 개정하여 신설한 각 회생법원의 관할구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및 개정내용>

개정대상	개정내용
[별표 1] 각급 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 대전회생법원 설치 · 대구회생법원 설치 · 광주회생법원 설치
[별표 10]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 대전회생법원 관할구역 규정 · 대구회생법원 관할구역 규정 · 광주회생법원 관할구역 규정

-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으며, 시행일은 2025년 3월 1일로 규정됨.

<신설 회생법원의 소재지, 관할구역 및 시행일>

법원명	소재지	관할구역	시행일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2025년 3월 1일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회생법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나. 검토의견

- 회생법원은 도산사건(회생·파산사건¹⁾)을 처리하는 전문법원으로, 법인회생,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일반회생, 국제도산 사건과 그 관련사건을 관장하고 있음. 우리나라 최초의 회생법원은 서울 회생법원으로 2017년 3월 1일 설치되었으며, 2023년 3월 1일에는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추가로 설치됨.
- 회생법원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0]에서 규정하고 있음. 서울회생법원은 서울특별시, 수원회생법원은 수원시·오산시·용인시·양평군 등 경기도 소재 18개 시·군, 부산회생법원은 부산광역시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음.
- 한편, 회생법원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회생법원 신설 당시 개정법률 부칙의 경과조치 규정²⁾³⁾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 본원이 회생법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1) '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며, '파산'은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참조).

2) 법률 제1447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지방법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은 이 법에 따른 회생법원으로, 관할 지방법원장은 이 법에 따른 회생법원장으로 본다. <2017. 3. 1. 시행, 2016. 12. 27. 일부개정>

3) 법률 제14470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회생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0항에 따라 제기된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사건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관할한다. <2017. 3. 1. 시행, 2016. 12. 27. 일부개정>

<회생법원(지방법원 포함) 및 그 관할구역 현황>

연번	권역	회생법원·지방법원	관할구역
1	서울고등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2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포천시, 강원도 철원군, 고양시·파주시·남양주시·구 리시·가평군
3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부천시·김포시
4		춘천지방법원	철원군을 제외한 강원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
5	수원고등	수원회생법원	수원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성남시·하남시· 평택시·이천시·안산시·광명시·시흥시·안성시· 광주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여주시· 양평군
6	대전고등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7		청주지방법원	충청북도
8	대구고등	대구지방법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9	부산고등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10		울산지방법원	울산광역시·양산시
11		창원지방법원	양산시를 제외한 경상남도
12	광주고등	광주지방법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13		전주지방법원	전라북도
14		제주지방법원	제주시·서귀포시

-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에 각각 해당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하려는 것임. 현재 회생법원은 서울, 수원, 부산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대전, 대구, 광주에 회생법원이 추가 설치되면, 전국적으로 6개 고등법원 권역 내에 회생법원이 각각 1개씩 설치되게 됨.

- 개정안과 같이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하게 되면, 도산사건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 도산사건 관계자들의 도산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도산사법서비스의 지역편 편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최근 5개년 법원별 도산사건 접수건수>

(단위: 건)

고등	회생(지방)법원	2019	2020	2021	2022	2023
서울	서울회생법원	36,990	38,467	37,568	36,910	43,470
	의정부지방법원	13,754	13,662	12,630	11,374	13,933
	인천지방법원	20,905	20,598	18,122	16,603	19,668
	춘천지방법원	3,315	3,474	3,545	3,195	3,722
	강릉지원	1,288	1,176	1,056	1,110	1,287
	소계	76,252	77,377	72,921	69,192	82,080
수원	수원회생법원	27,363	27,690	25,711	24,183	30,592
대전	대전지방법원	13,075	14,217	13,953	13,306	14,978
	청주지방법원	4,733	4,975	4,943	4,975	5,521
	소계	17,808	19,192	18,896	18,281	20,499
대구	대구지방법원	17,923	16,983	16,533	16,875	20,196
부산	부산회생법원	11,111	11,077	10,952	11,050	17,135
	울산지방법원	6,008	5,960	5,753	5,691	5,635
	창원지방법원	12,652	13,829	12,436	11,995	10,603
	소계	29,771	30,866	29,141	28,736	33,373
광주	광주지방법원	9,148	8,819	9,179	8,545	9,706
	전주지방법원	5,109	5,473	5,414	5,431	5,917
	제주지방법원	2,361	2,620	2,380	2,419	2,863
	소계	16,618	16,912	16,973	16,395	18,486
합 계		185,735	189,020	180,175	173,662	205,226

주 1) 도산사건 = 법인회생 + 일반회생 + 법인파산 + 개인파산 + 면책 + 개인회생

2) 강릉지원은 개인파산, 면책, 개인회생 사건 합계

자료: 법원행정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

- 다만,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추가로 설치하는 법원을 어디에 얼마만큼 설치할 것인지 여부는 신설 회생법원의 예상 사건 수 규모, 지역별 도산사법서비스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법원 조직·인력·시설 등 사법자원의 활용 및 배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최근 5개년 도산사건 접수건수를 살펴보면, 전체 도산사건 접수건수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가 2023년에는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2023년 법원별 접수건수를 살펴보면, 서울회생법원(4만 3,470건)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수원회생법원(3만 592건), 대구지방법원(2만 196건), 인천지방법원(1만 9,668건), 부산회생법원(1만 7,135건)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개정안은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의 관할구역을 각각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각 지역에서 회생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의 관할구역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법원행정처의 의견과 같이 이를 동일하게 유지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을 설치할 당시에 각 회생법원의 관할구역은 기존에 해당 지역에서 회생법원의 역할을 하였던

수원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의 관할구역과 동일하게 유지하였던
바 있음.

<도산사건 관할구역 비교>

현 행		개 정 안	
법원명	관할구역	법원명	관할구역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대구지방법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광주지방법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회생법원	광주광역시

- 또한, 개정안은 시행일을 2025년 3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신설 회생법원의 설치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이를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5년간 총 89억 7,400만원(연평균 17억 9,500만원)으로 추정됨. 이는 부산회생법원 신설의 사례와 같이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각각 대전·대구·광주고등법원의 청사를 활용하고, 판사 증원 없이 공무원만 각각 10명씩 증원하는 것을 가정한 것임 (참고자료. 비용추계 결과 참조).

다. 관계기관 의견

- 법무부는 경제적 위기에 놓인 기업과 개인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격차를 해소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전문법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판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전문성 확보를 통해 국민이 얻는 효용이 제반 비용을 상회할 때 입법적 결단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또한, 최근 신설된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23. 3. 개원)의 운영 현황을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회생법원 확대 설치의 효용성과 필요성 등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도 있다는 입장임. 아울러, 회생법원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건 관계인의 법원 접근성 등을 고려해 추가로 설치하는 법원의 위치와 수 등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법원행정처는 (i)경제지표 악화에 따른 도산사건 처리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ii)도산전문법원을 통한 신속한 도산절차 진행의 필요성, (iii)전국적으로 균등한 도산사법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등에 따라 아직 도산전문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나머지 고등법원 권역(대전, 대구, 광주)에도 도산전문법원을 확대 설치할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음⁴⁾.

4) 대법원은 회생법원이 미설치된 고등법원 권역(대구, 대전, 광주)에 회생법원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도 이미 여러 번 밝힌 바 있음.

대법원 보도자료, 「2023년 8월 기준 도산사건 통계」, 2023. 9. 26. 등

다만,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의 관할구역은 현행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의 관할구역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71

참고자료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대전, 대구, 광주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 소요는 2025년 16억 900만원 2029년 18억 9,6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89억 7,400만원(연평균 17억 9,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평균
대전, 대구, 광주회생법원 설치 (안 [별표1](각급 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등)	1,609	1,787	1,822	1,860	1,896	8,974	1,795

- 주: 1. 대전, 대구, 광주회생법원 설치(안 [별표1] 및 [별표10])는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이고, 유사사례인 부산회생법원을 참고하여 총 30명의 공무원이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대전, 대구, 광주회생법원에 각 10명씩 총 30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등(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과 자산취득비로 한정하여 추계
3.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2025년의 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는 10개월치를 추계

- 개정안에 따라 대전, 대구, 광주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경우 대전, 대구, 광주의 고등법원 청사를 활용하고 판사 증원 없이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서 규정한 대전, 대구, 광주회생법원의 관할구역이 광역시 규모이므로 이와 유사한 부산회생법원을 참고하여 추계
- 2023년 부산회생법원 개원 시 건물은 기존 부산고등법원종합청사를 활용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대전, 대구, 광주회생법원에 각 10명씩 총 30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등(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과 자산취득비로 한정하여 추계하기로 함

- 2023년 부산회생법원 개원 시 판사는 증원 없이 재배치하였고 공무원은 재배치 및 일부 증원